

장애학생 차별금지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30
제정일자	201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12.03.01.제정 2014.02.01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과 본교 내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한다.

- 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의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.
- 제3조(차별금지 등) ① 대학구성원 모두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보장권에 대해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대학구성원 모두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차별행위 및 차별의 판단은 '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'에 따라 판단한다.
- 제4조(대학의 책임) 대학은 장애학생의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, 본교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관리한다.
- **제5조(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)** 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는 장애학생복지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.
 -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'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'에 따른다.
- 제6조(교수-학습) ① 장애학생이 그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학과(전공)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은 교수-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일반학생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수-학습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및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상담 및 취업지도)** ① 대학은 장애학생에게 전문적 상담 및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제도 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장애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은 직업지도, 직업능력평가, 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, 취업알선, 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

장애학생 차별금지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30
제정일자	201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- 제8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제2조의 정의에 의한 장애학생 중 총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**제9조(벌칙)** 이 규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시정조치) ① 차별을 받은 장애학생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동 위원회는 장애학생의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가 접수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조사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시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산학취업처』를 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